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93호
2022. 7. 11.(월)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8430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84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843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8433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8434호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843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8436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8437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17
제843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26
제8439호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8440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8441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제8442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8443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8444호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44
제8445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430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 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 으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 를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 이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상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조항의 위치 변동 사항을 반영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기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제21조제1항 삭제)

－ 존속기한 : ' 21. 8. 19. ~ ' 22. 8. 18.(1년)

※ 최초설치 : ' 16. 8. 19.

◆ 서울특별시조례 제843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9,138명”을 “19,13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563명”을 “10,56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393명”을 “395명”으로 한다.

별표 4의 표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02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 3급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91	
-------	--------	--

3급	17	8		1	8	
----	----	---	--	---	---	--

4급	255	155	19	8	66	7
----	-----	-----	----	---	----	---

5급 이하 소계	10,244	
----------	--------	--

전문경력관 소계	129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본청 3급 1명 감축 사항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정원 감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법정 인력 증원,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을 위한 정원 조정 등 서울시 총 정원을 19,138명에서 19,139명으로 1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3급 △1)

－ 본청 3급 △1명

※ 존속기한 : ' 21. 8. 19. ~ ' 22. 8. 18.(1년) / 최초설치 : ' 16. 8. 19.

나. 「공직선거법」 개정(' 22. 4. 20.)에 따른 법정 인력 증원(4급 +1, 6급 +1)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110명 → 112명)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

▶ (4급 +1)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증원

▶ (6급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다.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

－ 일반직 5급 이하 △6 → 전문경력관 +6

◆ 서울특별시조례 제8433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내” 를 “서울특별시 내” 로, “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 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사항 및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 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 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회서비스원의 책무)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한다” 를 “수행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장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운영 등)”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법, 「민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를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을 “시장의 허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과 대표이사는”을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법 제1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재단은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③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표이사는”을 “원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이사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대표이사가”를 “원장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법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법 제11조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성과계약)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시장과 원장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검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20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 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내부위원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정책위원회 구성기준은 법 제28조제3항을 따른다.

제21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에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제반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제21조의4 및 제28조의4에 따라 위임된 성과계약과 정책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완·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원 설립근거 변경(제3조)

나. 사회서비스원 사업범위 변경(제4조)

다. 이사장·대표이사 명칭을 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변경 (제8조)

라.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요건 변경(제17조제3항)

마.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제18조 및 제19조)

바.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20조부터 제 25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8434호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에너지절약”을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친환경 마일리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친환경 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를 포함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총칭을 말한다.
3.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인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녹색실천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외의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에너지절약”을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를 “친환경 마일리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친환경 마일리지”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녹색실천마일리지는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 신청한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녹색실천마일리지의 경우 친환경 활동 참여 사업의 홈페이지 가입, 마일리지 간 연계 또는 그 외 방법을 통해 참여 신청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및 녹색실천마일리지의 참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할 수 있다.
- ③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 중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 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를 각각 “친환경 마일리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녹색실천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녹색실천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실천마일리지 홈페이지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색실천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0조) 중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를 “친환경 마일리지”로, “지식보급”을 “자발적 실천문화확산”으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마일리지 통합 운영) ①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의 친환경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 친환경 마일리지 통합 및 사용을 위한 홈페이지 등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의 통합에 따른 예산 집행, 마일리지 전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건물 에너지 절약 시민운동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외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친환경 행동 유도를 위한 녹색실천마일리지제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통합 사업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 나. 친환경 마일리지 및 녹색실천마일리지 정의 신설(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
- 다. 녹색실천마일리지 적용대상 및 참여 신청 조항 신설(제4조제3항)
- 라. 마일리지 통합운영 조항 신설(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3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의한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의 1/2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 1. 28.)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등 의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의료시설 용적률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의료시설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제24항)

- 1) 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정함(제55조제24항1호)
- 2)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 조례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함(제55조제24항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436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제목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5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정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공급하도록 함(제50조제3항 신설).

나.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법정상한용적률 초과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공급하도록 함.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제50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437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 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

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13.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4.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5.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서울특별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5.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제2호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별·연도별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후환경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⑨ 위원회 활동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전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

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적절하게 정비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힘써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주·정차 등의 상태에서 공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보급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 등 기반시설 보급에 힘써야 한다.

제19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할 때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이유로 산림을 훼손할 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0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사업

제21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관할 구역의 물관리, 생태계, 건강 등 부문별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2조(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에 관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공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제26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단체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시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모델의 개발·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 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관련 교육·홍보사업 지원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 지원
8.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
9.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 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때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 동향 조사 및 연구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3.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4.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6.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7. 지역별·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연계·조정 지원
8. 그 밖에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환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시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 및 시행('22.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 필요.
-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제1조~제3조)
- 나.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체계(제7조~제9조)
-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제10조~제13조)
- 라. 온실가스 감축시책(제14조~제20조)
- 마. 기후위기 적응사업(제21조~제22조)
-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제23조~제27조)
- 사. 기존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폐지(부칙)

◆ 서울특별시조례 제843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탈시설"(이하 '탈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지원주택"(이하 '지원주택'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주택을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하 '자립생활주택'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한 주택을 말한다.
6. "거주시설 변환"이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②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자원을 충분히 지원한다.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2. 탈시설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
3. 자치구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탈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4. 필요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탈시설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체) 시장은 탈시설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8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의 운영
2.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3.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4.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5.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
6. 탈시설 관련 조사·연구·교육
7. 그 밖에 탈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 특히, 장애인 탈시설과 같이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자를 명시함(제3조)
-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함(제4조)
- 다.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함(제5조·제6조)
- 라. 탈시설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함(제7조)
- 마.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을 명시함(제8조·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39호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투자·출자·출연기관”을 “투자·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출자기관”을 “시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 직원 등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과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 시설’ 이 제외되어, 상기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근로자 보호 및 시정 조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조례의 적용대상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을 추가하고자 함.
- 서울시 및 적용대상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구체적인 조사·조치 절차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을 추가함(제1조 및 제2조)
- 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절차와 권한 등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40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위생용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021. 4. 20. 개정, 2022. 4. 21. 시행)으로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 용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생리용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위생용품’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위생용품’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개정함(제19조제7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441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해, 공격 등 도전적 행동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해, 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사항을 규정함 (제7조제1항제10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442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층주거지 중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저층주택이 밀집한 고밀 저층주거지의 경우 생활기반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커 공급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공급 우선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요구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저층주거지도 우선 공급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6조제2항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443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및 제5조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용허가)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 동의 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예약시스템 등에 예약 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중 “받아야 한다.”를 “받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사용자 홍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운영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뚝섬승마훈련원 (삭제)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제1수영장	수영	
	제2수영장	수영	
	체조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야구장	야구	
	인라인하키장	인라인하키,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행사	
	위명업실	축구, 각종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1동 914)
	야구장	야구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다목적구장	풋살, 연식야구, 소프트볼	
효창운동장	축구장	축구, 필드하키 및 육상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다목적실1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다목적실2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구의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광진구 위커힐로 57-30(구의동 164-5)
신월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6(신월동 149-2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영, 각종경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 1-6))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산악문화체험센터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상암동 481-231)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시 설		금 액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창동실내체육관	4,000~8,000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돐구장	4,000~8,000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서남권 돐구장	4,000~8,000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돐구장 풋살구장	4,000~8,000	
육상장(트랙)	잠실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1,000~2,000	
체력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돐구장 체력단련장	4,000~8,000	
시 설		금 액	
실내골프연습장	잠실 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스크린 골프연습장	9홀	7,000~14,000
		18홀	14,000~28,000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체조관	잠실체조관	3,000~6,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돐구장 수영장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빙상장	목동실내빙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500~7,000
		어린이	3,000~6,000

클라이밍장	산악문화체험센터	성 인	3,000~6,000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비 고	1.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천연잔디가 식재된 경기장·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해당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위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잠실종합운동장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제1·2수영장	성 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골프연습장	성 인	40,000~60,000					
	청소년	30,000~50,000					
올림픽주경기장 및 체조관	성 인	7,500 ~11,200	15,000 ~22,500	22,500 ~33,700	30,000 ~45,000	33,700 ~50,500	36,700 ~55,000
	청소년	5,600 ~8,400	11,200 ~16,800	16,800 ~25,200	22,400 ~33,600	25,200 ~37,800	27,400 ~41,100
	어린이	4,700 ~7,000	9,400 ~14,100	14,100 ~21,100	18,800 ~28,200	21,100 ~31,600	22,900 ~34,3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골프연습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월 개인사용료 이용자에 한한다.						

나. 서남권 돛구장

(단위 : 원)

시설	대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목동실내빙상장

(단위 : 원)

구 분	수 강 료	비 고
성 인 반(주 3회)	73,000 ~ 109,500	1일 1시간, 1개월 기준
초·중·고반(주 2회)	73,000 ~ 109,500	
초·중·고반(주 3회)	88,000 ~ 132,000	
초·중·고반(주 5회)	140,000 ~ 210,000	
주말반(주 1회, 1일 2시간)	73,000 ~ 109,500	

라. 창동문화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15,400 ~23,100	30,800 ~46,200	46,200 ~69,300	61,600 ~92,400	69,300 ~103,900	75,400 ~113,100
	청소년	8,800 ~13,200	17,600 ~26,400	26,400 ~39,600	35,200 ~52,800	39,600 ~59,400	43,100 ~64,600
	어린이	8,200 ~12,300	16,400 ~24,600	24,600 ~36,900	32,800 ~49,200	36,900 ~55,300	40,100 ~60,100
체력단련장	44,000 ~ 66,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마. 장충체육관

시설	수강료
다목적실	100,000(상한액)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1.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2. 다목적실의 수강료는 월 상한액임.

바. 산악문화체험센터

(단위:원)

시설	대상	수강료	비고
클라이밍장	성인	36,000~72,000	월8회, 1일 1시간 기준
	청소년	32,000~64,000	
	어린이	30,000~60,000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통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1,000 ~20,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 육 경 기	체 육 행 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157,300	181,000~235,300	423,000~549,9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94,900	110,000~143,000	244,000~317,200	
	제1·2수영장	09:00~18:00	804,000~1,045,200	1,206,000~1,567,800	1,548,000~2,012,400
		09:00~12:00	268,000~348,400	402,000~522,600	516,000~670,800
		12:00~18:00	680,000~884,000	1,020,000~1,326,000	1,341,000~1,743,300
	야구장	221,000~287,300	331,000~430,300	530,000~689,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670,800	774,000~1,006,200	1,252,000~1,627,6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8,000~192,400	222,000~288,600	355,000~461,500	
	체조관	41,000~53,300	62,000~80,600	138,000~179,4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58,500			
	풋살구장(2시간)	32,000~41,6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571,000~742,300	857,000~1,114,100	1,267,000~1,647,100
	보조경기장	1일	232,000~301,600	350,000~455,000	560,000~728,000
		2시간	93,000~120,900	140,000~182,000	224,000~291,2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위명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715,000~929,500		
	VIP룸(")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10~27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113,800
		A2			77,800~101,100
		A3			63,400~82,400
		A4			61,800~80,300
		A5			45,600~59,200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24,000~291,200	336,000~436,800	538,000~699,400
	축구장	1일	155,000~201,500	232,000~301,600	372,000~483,600
		2시간	51,000~66,300	77,000~100,100	170,000~221,000
	수영장	09:00~18:00	489,000~635,700	735,000~955,500	942,000~1,224,600
		09:00~12:00	163,000~211,900	245,000~318,500	314,000~408,200
		12:00~18:00	413,000~536,900	621,000~807,300	816,000~1,060,800
	보행광장(4시간, ㎡당)		200~26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볼펜(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민간 목동장	주경기장	1일	170,000~221,000	256,000~332,800	409,000~531,700	
		2시간	68,000~88,400	102,000~132,600	163,000~211,900	
	야구장	1일	111,000~144,300	167,000~217,100	466,000~605,800	
		3시간	66,000~85,800	100,000~130,000		
	실내빙상장		102,000~132,600 (1시간)	153,000~198,900 (1시간)	7,331,000~9,530,300	110,000~143,000 (1시간)
	다목적구장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			
효창운동장		1일	125,000~162,500	187,000~243,100	300,000~390,000	
		2시간	50,000~65,000	74,000~96,200		
장충체육관		체육관	129,000~167,700	193,000~250,900	451,000~586,3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33,500	60,000~78,000	79,800~103,700	
		다목적실(3시간)	12,000~15,600	31,200~40,600	37,200~48,4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창동문화 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224,900			
산악문화 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205,400			
	다목적실		352,000~457,600			
	시청각실		232,000~301,6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32,500			
비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시설 내 집기 대여료와 데크·광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에 부속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시립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할당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한 사용기준과 예약 투명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례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일부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용시민에게 적정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제안된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우선 사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제4조제4항)
- 나. 목동 주경기장 및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의 전용사용료를 조정함(별표 3)
- 다. 뚝섬승마훈련원 관련 항목을 삭제함(제16조제2항, [별표1], [별표2], [별표3])
- 라. 시장이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을 위해 노력하고 체육 시설 특정장소에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함(제4조제5항, 제15조)
- 마. 공공체육시설 사용기간 등에 관한 공정한 기준 마련 근거를 규정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제5조제4항~제5항, 제5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444호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와 예술을 상품화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다.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 디자인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산업
 - 바.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2.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콘텐츠”란 콘텐츠의 보존 및 이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5.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6. “에듀테인먼트”란 교육 활용을 목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의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법·제도 등의 개선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청장,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및 기업, 창작자 등에게 입주공간 또는 임대료 지원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제작·마케팅, 기술개발 등 지원
4.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5.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6.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산·관·연 협력체계 구축
7.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평가
3. 제6조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제1조~제2조).
- 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함(제5조).
- 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제6조).
- 라. 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마.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제11조).
- 바.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45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 1회”를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지거나 임기 중에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중전의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겸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	
	수행업무 내역			
	분야	협회 및 단체[],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국세청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참조 체크		
	기관 성격	민간[] 공공[]	영리성 여부	영리[] 비영리[]
	보수 수령 여부	보수 수령[],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액	근로소득	월 천원,	년 천원
		근로소득 외 소득	월 천원,	년 천원
		계	원	
	기관·단체 주소		전화번호	
기타사항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0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겸직신고현황(공개항목)

[illegible]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겸직신고’ 서식을 개정하고, 조례 위임된 겸직내용 공개 방법 중 ‘공개항목’ 을 서식으로 신설 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등 현행화 및 겸직신고 서식을 개정하고 신고내용 공개항목 규정 서식을 신설함(별지서식).
- 나.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 공개 시기와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제10조의2제4항 일부개정).
- 다. 겸직 신고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점검하도록 함(제10조의2제5항 신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